

[학칙 및 시행세칙 변경 안내]

[교무위] 19-02-10(2019.03.25.)

학사학위취득 유예제(졸업 유예제) 관련 학칙 및 세부 지침 변경

학사학위취득 유예제(졸업 유예제)에 관한 고등교육법 시행(2019.01.01.)에 따른 학칙 및 세부 지침 변경을 결의함.

1) 명칭 변경

관련 학칙 및 시행 세칙(지침 포함)에 표기 된 ‘졸업 유예(제)’를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로 변경

2) 관련 학칙 및 시행 세칙(지침 포함) 변경

현행 학칙	변경
제27조 (등록) ① 등록은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 [개정: 2010.1.7.]	제27조 (등록) ① 등록은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 [개정: 2010.1.7.] 단,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3.25.]
제45조의 2 (졸업 유예) [본조 신설: 2017.2.27] ① 정규 8학기(건축학과 10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모든 졸업기준을 갖추었으나 정한 기간에 본인이 졸업 유예 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졸업 유예 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45조의 2 (학사학위취득 유예) [본조 신설: 2017.2.27][개정: 2019.3.25] ① 정규 8학기(건축학과 10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모든 졸업기준을 갖추었으나 정한 기간에 본인이 학사학위취득 유예 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학사학위취득 유예 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현행 시행 세칙	변경
제3장 제1조의 4항 3번 3. 정규 8학기(5년제는 10학기) 등록을 필한 후에 졸업 필수 과목으로 학점이 부여되지 않은 과목이 남은 경우, 또는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취업준비를 위해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인 경우, 한 과목을 반드시 수강하고, 별도로 정해진 기본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 2018.2.26.]	제3장 제1조의 4항 3번 3. 정규 8학기(5년제는 10학기) 등록을 필한 후에 졸업 필수 과목으로 학점이 부여되지 않은 과목이 남은 경우, 또는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취업 준비를 위해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인 경우, 학적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학점을 등록 할 필요는 없지만 수강 학점이 있는 경우 본교 수업 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학칙시행세칙 제3장 제1조 ④항 등록금)를 적용한다. [신설 : 2018.2.26.] [개정 : 2019.3.25.]
제7장 제6조 (졸업 유예 - 학칙 제45조의 2) [본조신설: 2017.2.27] ① 정규 8학기(건축학과 10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졸업사정을 통과한 졸업대상자에 한하여 졸업 유예 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장 제6조 (학사학위취득 유예 - 학칙 제45조의 2) [본조신설: 2017.2.27][개정: 2019.3.25] 정규 8학기(건축학과 10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졸업사정을 통과한 졸업대상자에 한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 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졸업 유예 신청은 학기마다 신청 가능하며 최대 2개 학기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은 학기마다 신청 해야 하며 재학 연한 에서 해당 학생의 재학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 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③	졸업 유예 자는 학위수여 유예기간에 휴학할 수 없다.	학사학위취득 유예 자는 학위수여 유예기간에 휴학할 수 없다.
④	졸업 유예 자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에 참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는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 실비를 학생에게 부담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졸업 유예 자는 학점이 부과되는 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있다.	학사학위취득 유예 자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에 참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는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 실비를 학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학사학위취득 유예 자는 학점이 부과되는 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있다.
⑤	졸업 유예 자는 반드시 한 과목 이상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금은 수업연한초과자의 등록을 적용한다.	학사학위취득 유예 자는 학적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학점을 등록 할 필요는 없지만 희망하는 경우 수강신청을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⑥	졸업 유예 자로 확정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나, 사망, 질병, 군입대 등의 사유로 학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 졸업 유예 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유예신청학기의 졸업자로 처리된다.	학사학위취득 유예 자로 확정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나, 사망, 질병, 군입대 등의 사유로 학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 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유예신청학기의 졸업자로 처리된다.
⑦	학점이 부과되는 교과목을 수강신청 한 자가 본교에서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졸업 유예 를 직권 취소하며,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자로 처리한다.	학사학위취득 유예 자의 등록금은 수강 학점이 없는 경우 학적 보유 및 제반 시설 이용을 위해 소정의 등록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수강 학점이 있는 경우 본교 수업 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학칙시행세칙 제3장 제1조 ④항 등록금)를 적용한다. 본교에서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 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 를 직권 취소하며,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자로 처리한다.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칙」 제45조의 2에 따라 삼육대학교 소속 학생의 **학사학위취득 유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사학위취득 유예**”라 함은 「삼육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45조에 규정된 졸업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본인의 원에 의하여 해당 학기 졸업 시기에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한까지 졸업을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2.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라 함은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허가를 받고,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소속 학사과정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유예기간)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재학 연한**에서 해당 학생의 **재학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까지 가능하다.

제5조 (유예절차)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SU-WINGS 학사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며 소속 학부

(과)장을 경유하여 총장이 허가한다.

제6조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

- ① 학칙 제3조(수업연한)에 규정된 수업 연한을 충족하고 학칙 제3조(재학 연한)를 초과하지 아니한 자
- ② 학칙 제43조(학위수여)에 규정된 졸업을 인정받은 자로서 8학기(건축학전공은 10학기) 이상 이수한 자

제7조 (신청시기)

- ① 최초 신청은 8학기(건축학과는 10학기)이상을 이수하고 졸업 요건을 충족하는 해당 학년도 학기말 성적이 확정된 시기에 한다.
- ② 2회째 신청은 졸업유예 최초 학기의 학기말 성적이 확정된 이후에 한다.

제8조 (유예조건)

- ①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에 휴학할 수 없다.
- ②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반드시 학점을 등록 할 필요는 없지만 희망하는 경우 수강신청을 통해 학점을 이수 할 수 있다.
- ③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등록금은 수강 학점이 없는 경우 학적 보유 및 제반 시설 이용을 위해 소정의 등록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수강 학점이 있는 경우 본교 수업 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학칙시행세칙 제3장 제1조 ④항 등록금)를 적용한다.
- ④ ~~어마 이수한 과목은 재이수할 수 없다. 다만, “F” 성적을 받은 과목은 재이수할 수 있다.(삭제)~~

제9조 (유예자 권리와 의무)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취지의 범위 안에서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10조 (기타사항)

- ①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허가를 받은 자가 본교에서 정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직권취소하며,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 처리한다.
- ②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허가를 받고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별지에서 정하는 사망, 부상, 질병, 군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 지속이 곤란한 경우에는 학생의 신청[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예기간 학기의 졸업자로 처리한다.
- ③ 제2항에서 정한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 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금액의 환불은 「삼육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 ④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 만료 후, 천재지변 등의 지연 사정이 없는 한 졸업 처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2017학년도 전기 졸업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